

2000.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6. 30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정 : 2001. 7. 12
 - 심사 및 의결 : 2001. 7. 12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청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다. 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 입)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입 (수납액)	세 출 (지출액)	잉 여 금
계	659,579,290	762,848,355	791,093,549	610,701,484	180,392,065
일 반 회 계	408,419,892	493,046,306	505,802,198	387,973,553	117,828,645
특 별 회 계	251,159,398	269,802,049	285,291,351	222,727,931	62,563,420
공기업특별회계	198,029,317	214,509,255	232,475,960	189,293,578	43,182,382
기타특별회계	53,130,081	55,292,794	52,815,391	33,434,353	19,381,038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 략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491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주요골자

- 2000년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참고자료

-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감사의견서 1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천시 결산검사

대 표 위 원	강 진 석
위 원	임 성 운
위 원	김 선 구
위 원	박 해 울
위 원	정 길 영

1. 총 평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한 선진 각국들이 국가예산의 과다한 지출로 재정압박을 받음으로써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로 인해 90년대부터 행정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고도성장을 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업에 주력하려는 단계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에 부천시에서도 재무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용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입은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상호보완 및 연계 프로그램의 미비로 업무의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대적 집중기능도 취약해 세정업무 전산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업무연계가 필요한 기관간(예: 행자부, 국세청, 법원, 지자체)연결 프로그램이 없어 정확한 과세 및 체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정전산화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강화로 조세형평을 이룸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 시의 세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다면 앞으로 시행될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재정보전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0년도의 경우 147억 5천여 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였는 바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자체 재원인 시세의 징수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정보전금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산검사를 시작한 이래 세출은 집중적인 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대안들의 수렴으로 수년간 자금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급여 업무의 본청 통합 집행, 자금배정을 즉시 배정으로 전환, 월말 일상경비 자금의 ZERO화 추진, 지속적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를 취함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특별히 재정지표를 임의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면에서는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지방채 잔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성장성 면에서는 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익성 면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는 본연의 업무인 결산의 정확한 검증과 이를 토대로 한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를 통한 재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659,579,290,21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1,093,549,20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62,848,354,720원(전년도 이월금 103,269,064,502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10,701,438,87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80,392,065,32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양
여금 총액 180,392,065,32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7,166,367,920원
 - 사고이월 8,355,288,865원
 - 계속비이월 70,489,135,31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73,875,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907,397,844원이다.

2. 2000년도 일반회계는

- 수입예산액 408,419,89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5,802,198,151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93,046,306,080원(전년도 이월금 84,626,414,0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87,973,552,6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17,828,645,49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
계별 잉여금 총액 117,828,645,491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712,002,690원
 - 사고이월 1,819,890,740원
 - 계속비이월 70,138,795,86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43,675,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714,280,541원이다.

3.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 251,159,398,21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291,351,05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69,802,048,640원(전년도 이월금 18,642,650,422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727,931,21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2,563,419,83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2,563,419,838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454,365,230원
- 사고이월 6,535,398,125원
- 계속비이월 350,339,45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0,199,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93,117,303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53,130,08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815,391,371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5,292,794,410원(전년도 이월금 2,162,713,4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3,434,353,0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9,381,038,3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0원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9,381,038,35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3,633,586,49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0,199,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17,252,131원이다.

1)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3,6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399,64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3,63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06,3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393,26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4,393,269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93,269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5,980,40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80,665,46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5,980,404,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50,465,73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0,199,7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
금 총액 30,199,7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0,199,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3)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240,7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905,740원 이며,
- 세출예산현액 240,72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0,00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244,905,7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
금 총액 244,905,74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905,740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2,829,72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91,720,36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3,727,045,000원(전년도 이월금 897,323,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497,341,59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9,994,378,77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9,994,378,77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680,112,61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4,266,169원이다.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668,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2,079,53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68,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51,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71,079,53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71,079,53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1,079,536원이다.

6)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6,097,03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81,529,05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7,362,429,410(전년도 이월금 1,265,390,4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43,648,9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737,880,13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737,880,13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953,473,88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4,406,252원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7,270,56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69,091,56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270,560,000(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00,890,4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768,201,16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
금 총액 6,768,201,16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68,201,165원이다.

3. 일반회계 재무상태의 검토

□ 목 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시의 재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나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시의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검토방법

이미 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며 이는 첫째, 재무상태의 부실징후를 분석하는 안전성(재무상태의 건전성) 둘째, 장기적인 재무성과의 변동을 예측하는 성장성 셋째, 세입세출의 수지를 살펴보는 수익성(업무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분석지표를 사용함에 따라 분석검토표에 지표의 계산식을 포함하였습니다.

□ 안전성(재무상태의 건전성)

재무상태의 안전성은 수익적인 측면(동태적 측면)과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정태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으며, 수익적 측면에서는 총세입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과, 경상비, 인건비 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검토하였으며,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은 순세계잉여금 잔액의 비율, 지방채잔액의 비율 및 지방채상환능력과 예산변동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단위 : %, 천원, 회)

구 분	내 용	96.	97.	98.	99.	2000.	비 고
자주재원비율	(지방세 + 세외수입 + 재정보조금) /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지방채발 생 제외)	91.18%	82.44%	81.41%	77.93%	81.55%	

경상비부담률	(인건비 + 물건비 + 이전경비) / 자주재원	47.29%	49.18%	70.77%	78.42%	65.38%
인건비부담률	인건비 / 자주재원	16.44%	17.68%	19.74%	21.98%	16.04%
잔액수지율	순세계잉여금 / 세입총액(전기이월금, 지방채 제외)	15.17%	4.57%	13.31%	7.63%	9.04%
지방채잔액비율	지방채잔액 / 세입총액(전년도이월금, 지방채 제외)	7.93%	9.51%	19.73%	30.92%	34.01%
지방채상환능력	지방채상환액 / 자주재원	0.59%	1.59%	1.93%	1.84%	1.59%
시민 1인당 채무잔액(천원)	지방채잔액 / 시민수	29	40	73	126	168
예산변동률	(최종예산-최초예산) / 최종예산	25.01%	24.68%	25.10%	12.56%	17.16%
투자비의 지방채부담률	당기지방채발생액 / 자본적지출액	2.93%	9.08%	18.90%	43.44%	25.00%

먼저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비율이 1996년에 91.18%에서 2000년에는 81.55%로 악화되었으나 자주재원으로의 경상비 및 인건비의 부담률은 큰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상비 및 인건비의 증가율이 낮아서 전체적인 자주재원대비 경상비 등의 비중에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말 잔액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잔액수지율의 경우에 1996년에 15.17%에서 1997년에 4.57%까지 낮아졌다가 2000년 현재는 9.0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실질순수지율이 균형예산에 가깝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상황에서 재무상태의 안정성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투자사업의 증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매년 세입총액에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7.93%에서 2000년에는 34.01%에 달하였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결국은 상환해야 하는 외부차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잔액의 증가는 장래의 예산의 편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변동률을 검토한 바 최초예산대비 최종예산의 추경 등으로 인한 변동이 1998년에 최고 25.01%에 이르는 등 평균 약 20% 정도의 예산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20% 정도의 예산이 최초 예측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재무상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잔액수지율의 감소, 자주재원비율의 감소 및 지방채잔액의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안정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지출의 효율화 및 적정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방채 상

환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지방채잔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 성장성

성장성은 동태적인 접근으로 직전회계연도의 변동률과 그 추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미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변동과 경제여건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장성의 분석대상은 행정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내적인 부분은 자주재원증가율, 총세입증가율, 잔액수지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재정규모증가율, 투자경비비율 등이며 외적인 부분은 불변 GRDP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검토하였습니다.(단위: %, 천원, 회)

구 분	내 용	96.	97.	98.	99.	2000.	비고
자주재원증가율	(당기금액 - 전기금액) / 전기금액	10.69%	3.24%	-14.30%	5.70%	26.02%	6.27%
총세입증가율 (이월금제외)	(당기세입 - 전기세입) / 전기세입	3.92%	14.18%	-13.21%	10.41%	20.43%	7.15%
실질수지증가율	(당기수지율 - 전기수지율) / 전기수지율	92.14%	-69.88%	191.29%	-42.64%	18.38%	37.86%
불변 GRDP 성 장 률	(당기GRDP - 전기GRDP) / 전기GRDP	-1.50%	6.98%	2.77%	n/a	n/a	1.65%
인 구 증 가 율	(당기인구 - 전기인구) / 전기인구	2.17%	-0.57%	-1.59%	0.15%	0.003%	0.03%
지 방 세 증 가 율	(당기지방세 - 전기지방세) / 전기지방세	15.00%	4.37%	-0.68%	-3.76%	13.73%	5.73%
투 자 경 비 비 율	자본지출액 / 당기세출총액	39.36%	47.38%	47.20%	34.62%	38.15%	41.34%
재정규모증가율	당기총지출예산 / 전기총지출예산	100.56%	111.19%	99.67%	95.87%	120.59%	105.58%
1인당경상경비 증 가 율	(당기1인당경상경비 - 전기1인당경상경비) / 전기1인당경상경비	20.09%	7.98%	25.34%	16.94%	5.07%	15.08%

먼저 행정 외적인 부분으로 인구증가율은 2000년도에 0.003%로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불변 GRDP의 경우에는 1998년도 이후의 자료는 없어서 분석의 한계는 있으나 1998년에 2.77%로 소폭 성장에 그치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성숙기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내적인 부분으로는 첫째, 자주재원증가율, 잔액수지증가율, 지방세증가율, 총세입증가율 등은 연도별 변동이 심한 편이나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재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6.27%, 총세입증가율의 경우에는 연평균증가율이 7.15%, 지방세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이 5.73% 정도입니다.

반면에 세출과 관련된 투자경비비율, 재정규모증가율 및 1인당 경상경비 증가율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동하였으며, 재정규모증가율이 연평균 5.58%, 1인당 경상경비 증가율은 연평균 15.0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경비비율이 세출총액의 연평균 41.34%에 이르고 있는 점은 부천시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재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은 행정 외적으로는 정체단계에 있으나 행정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행정규모의 증가가 보다 크므로 부담이 되나 투자경비비율이 높은 것은 장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익성(생산성)

수익성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생산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의 분석은 자주재원증가율과 세출결산증가율을 비교하는 재정압박지수,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실질수지율과 경상수지를 이용한 이자보상비율 및 불용액 비율 등을 이용하였습니다.(단위 : %, 천원, 회)

구 분	내 용	96.	97.	98.	99.	2000.	비고
주 민 1 인 당 지 방 세 비 율	지방세수납액 / 주민수	160	168	169	163	185	
재 정 압 박 지 수	자주재원증가율 - 세출결산증가율	11.38%	-21.23%	-25.97%	14.01%	-0.28%	-4.42%
지 방 세 징 수 율	지방세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의액	88.85%	92.54%	89.79%	90.21%	92.28%	90.73%
세 외 수 입 증 가 율	(당기세외수입 - 전기세외수입) / 전기세외수입(이월금 제외, 재정보전금 포함)	7.02%	2.19%	-27.05%	17.76%	38.83%	7.75%
실 질 수 지 율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액 /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	7.57%	-8.72%	8.04%	-4.42%	2.70%	1.04%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비 율	지방세수납액 / 세외수입수납액(재정보전금 포함)	91.75%	93.71%	127.58%	104.26%	85.41%	100.54%

이자보상비율	지방채이자 /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재정보전금)- (경상경비 - 지방채이자))	0.01	0.01	0.04	0.12	0.10	5.65%
불용액비율	불용예산 / 최종세출예산	10.11%	4.87%	9.40%	4.21%	4.75%	6.67%
주민 1인당 경상경비(천원)	경상경비 / 주민수	158	171	214	250	263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평균 약 4.42% 정도 세출결산증가율이 자주재원증가율보다 높으며 재정보전금을 제외할 경우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과년도분을 제외할 경우에 평균 90.73% 정도가 되며 당기순이익률에 해당하는 실질수지율의 경우 연도별 기복이 있으나 1996년에 7.57%에서 2000년에는 2.7%로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대비 지방채이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1996년에 0.01에서 2000년에는 0.10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0.10이라는 수치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직 아닐지라도 증가율은 충분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장래의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성은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실질수지율의 변동이 심한 것은 이러한 악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세원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내용의 요약

시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기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여건의 변화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수익성과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성의 경우에는 시의 계속비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의 평가 및 실시와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용만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4. 세입결산

1. 총괄

○ 2000년 세입규모는 수납액 기준으로 모두 7,91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058억원으로 64%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2,853억원으로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수 납 액	구 성 비	
일 반 회 계		5,058	64%	100%
지 방 세		1,443		29%
세 외 수 입		2,095		41%
교 부 금, 보 조 금 등		1,150		23%
지 방 채		370		7%
특 별 회 계		2,853	36%	100%
공 기 업		2,325		81%
기 타		528		19%
합 계		7,911	100%	

- 일반회계는 지방세(시세)가 1,443억으로 29%를, 세외수입이 2,095억으로 41%를, 그리고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23%, 지방채가 370억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시세와 도세를 모두 포함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총 징수실적은 모두 2,849억이며 이 중 시세가 1,443억으로 50.7%를, 그리고 도세가 1,406억으로 4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금 징수실적이 도세와 시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 억원)	구 성 비
시 세	1,443	50.7%
도 세	1,406	49.3%
합 계	2,849	100%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과 결손율을 보면 수납률이 91.7%로 전년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율도 0.7% 정도로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단, 98년 수납률과 결손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있습니다.

구 분	금 액(억원)			비 율(%)		
	98.	99.	2000.	98.	99.	2000.
징 수 결 정 액	7,682	7,235	8,631	100	100	100
수 납 액	7,114	6,606	7,911	93.2	91.3	91.7
미 수 납 액	518	629	720	6.8	8.7	8.3
결 손 처 분	10	64	57	0.1	0.9	0.7
이 월 액	508	565	663	6.7	7.8	7.6

※ 미수납대비 결손율 현황

구 분	98.	99.	2000.
결손처분	1.9%	10.2%	7.9%
이 월 액	98.1%	89.8%	92.1%
합 계	100%	100%	100%

○ 세입구성비는 수납액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의 상대적 비중이 줄고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 분	금 액(억원)			구 성 비 I			구 성 비 II		
	98.	99.	2000.	98.	99.	2000.	98.	99.	2000.
일반회계	4,258	4,166	5,058	59.9	63.1	63.9	100%	100%	100%
지방세	1,319	1,269	1,443	18.5	19.2	18.2	31.0	30.5	28.5
세외수입	2,104	1,731	2,096	29.6	26.2	26.5	49.4	41.6	41.5
교부금등	486	764	1,150	6.8	11.6	14.5	11.4	18.3	22.7
지방채	349	402	370	4.9	6.1	4.7	8.2	9.6	7.3
특별회계	2,856	2,441	2,853	40.1	36.9	36.1	100%	100%	100%
공기업	2,429	1,967	2,325	34.1	29.8	29.4	85.1	80.6	81.5
기타	427	474	528	6.0	7.1	6.7	14.9	19.4	18.5
합 계	7,114	6,607	7,911	100%	100%	100%			

II. 운영 및 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

1) 전산화 환경에서의 입력통제 강화 요망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산화는 분류와 연산의 자동화로 단지 처리의 정확성만 보장할 뿐 출력되는 모든 숫자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님. 즉, 입력에 오류가 있게 되면 잘못된 출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전산화된 업무 환경에서는 모든 관리노력이 입력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입력통제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때 수많은 원시문서가 전산에 입력된 것을 일일이 대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당일 작업일지가 자동 출력되게 하고 작성된 전산대장에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되게 하

여 이를 원시문서의 건수와 검증하는 업무결제가 필수적입니다.(Batch Control)

-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세입업무 과정에서 세정 전산화시스템은 물론 각 실무자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음. 특히 자납세목의 경우 누락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업무에는 Excell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목	세원포착 업무	수납확인 업무	비 고
취득세 / 등록세	민원허가과와 지적과 등에서 건물 준공 및 사용내역을 통보받아 과세자료관리대장 작성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각각의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함	Excell 활 용
지역 개발 세	매월 지하수 사용량 검침대장을 부과대상자 현황과 대조하여 납세대상자 선별 내역부 작성	개별 자납여부를 확인하여 기록	Excell 활 용
사 업 소 세	민원허가과, 보건소 등에서 공장 등록 자료를 받아 관리대장에 등재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수납 여부 확인하여 기록	Excell 활 용

- 담당 실·과에서 통보한 세원포착 관련 공문을 자체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각각의 수납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이 모두 담당자 개인에게만 의존할 뿐 별도의 검증절차 없습니다.

1. 세원포착 작업

- 당일 접수한 공문 건수와 전산에 입력한 건수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음
- 작성된 관리 대장에 일련번호가 누락되어 Batch Control 기능 없음
- 관리대장 작성 과정에서 건수를 누락하게 되면 과세누락될 위험이 존재

2. 수납확인 작업

- 세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산 수납처리된 내역과 대장에 수납 기록된 내용을 대사하지 않음
- 수납기록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게 되면 미수납자 관리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

□ 개선권고 사항

- 전산시스템에서 입력내용을 Batch로 일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결제 Line을 구축해야 합니다.
 1. 전산시스템에서 당일 입력내역이 일개의 형식으로 출력되어야 함
 2. 출력된 작업일계를 원시문서 처리의 건수와 대사하여 결제해야 함
- 작성된 전산 대장은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출력하여 최종 번호와 일계의 누적번호가 대조되어야 합니다.

2)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방세 중 대표적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등록세와 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취득·등록세】

• 관련법규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그러나 법인의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으로,

첫째, 법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하한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부 등을 고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가액을 낮게 신고할 우려가 있고,

둘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개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맞추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실거래가액을 줄일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정일의 법인과 개인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자료부를 검토한 결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큰 신고건 수가 많이 있었음

⇒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 또는 신축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추어 예시된 사례는 신고가액의 정확성이 의문시됨

⇒ 신고접수를 하는 담당자는 법인장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세무조사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고가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임

⇒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주기적으로 관련자료가 세무조사팀으로 보고되는 절차가 필요함

【개인사례】

납부의무자	취득물건	검인계약서(A)	시가표준액(B)	차액(C)	C/B
김○○	토지 / 건물	45,200,000	44,986,497	213,503	0.4%
박○○	"	43,000,000	42,737,658	262,342	0.6%
이○○	"	31,000,000	30,142,080	857,920	2.8%
"	"	40,000,000	39,345,463	654,537	1.6%
정○○	"	88,000,000	89,445,970	1,445,970	1.6%

⇒ 개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신고의 하한선이므로 이에 맞추어 검인계약을 받는 것이 관행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다는 것은 과세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건건이 조사하는 것이 현실과 실무상으로 곤란하고 세무조사에 의해 적출가능하다고 하나 개인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한 개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누락세원의 발굴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무엇보다 이러한 위법한 신고가 거래관행에 묻혀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연 1회라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 민 세]

• 2000년도 주민세 자진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건 수	금 액	금 액 비 율
법 인 세 할	1,749	11,261,007,020	42%
중 합 소 득 세 할	13,636	3,336,251,990	13%
양 도 소 득 세 할	933	644,547,700	2%
특 별 징 수 분	54,962	11,426,102,210	43%
합 계	71,280	26,667,908,920	100%

• 주민세의 세원자료를 주기적으로 세무서로부터 받아 납부자와의 수작업 대사를 통해 미납액을 찾고 가산세를 붙여 고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연간 7만 건이 넘는 과세자료를 전산이 아닌 수작업 장부로 세무서로부터 받아 건건이 대사하는 것은 대단한 행정비능률을 초래하고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지며

둘째, 실수 또는 고의로 대사작업을 통해 적출된 미납자에 대한 과세를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은 물론

셋째, 법인세할 내지 양도세할 등 그나마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세는 대사작업을 모두 하고 있으나 특별징수분(갑근세 원천납부세액분)의 경우 매달 수천 건을 수기대사해야 하는 관계로 실무적으로도 사실상 대사작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 큰 문제임

특별징수분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매달 고의로 체납을 시키고 연말정산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부천시는 이를 적발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임

□ 개선권고안

○ 취·등록세 : 신고가액이 실제거래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전 유도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법인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 거래내역이 자동출력되도록 세무전산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세무조사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이 요망됨

• 개인의 경우 위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과 사전에 팜플렛 등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세무서로부터 받아 양도세 신고서상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세 신고서의 신고가액을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적출하여야 할 것임

○ 주민세

- 세무서로부터 주민세 과세자료를 수기자료가 아닌 전산자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특별징수분 주민세에 대한 모든 대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일용인부임 활용 등)

3) 재정보전금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2000년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의 규모와 세입 일정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월	도세 징수액	종전의 교부금	재정보전금	세입차액
1	118.4	-	-	
2	100.6	59.2	1.8	57.4
3	106.4	50.3	67.2	-16.9
4	124	53.1	75.6	-22.5
5	134.8	62	48.7	13.3
6	171.8	67.3	41.2	26.1
7	116.5	70.9	38.4	32.5
8	90	52.6	56	-3.4
9	104	44.6	36.3	8.3
10	113.9	51.8	34.5	17.3
11	118.6	56.8	36.7	20.1
12	98	59.2	25.2	34.0
13	4.4	49	31.2	17.8
14	4.8	2.2	38.7	-36.5
합계	1,406.3	679.0	531.5	147.5

- 종전에 도세징수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총액대비 37.8% 정도 수렴하였습니다. 결국 금액으로는 약 147억원이 감소하여 종전대비 21.7%의 세입 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 시책추진 보전금의 경우 지급 시기조차 일정하지 않아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예측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 특히 2월의 경우는 종전의 징수교부금과 대비할 때 상당액이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재정보전금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징수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민감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즉 세금을 100원 징수할 때 우리 시의 재정수입 기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현 제
도 세	50	37.8
시 세	100	100

□ 개선권고 사항

- 지방세 징수에 관해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동일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민감도가 높은 시세에 우선 집중하는 탄력적인 세정운용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세금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행정 여건상 도세와 시세의 우선 징수 문제가 대립될 경우에는 시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시의 세입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재정보전금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징수시스템의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의 전산화가 2000년도 중 이루어져 2001년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행 중인 상태임
2000년도 결산은 수기장부로 되어 있어 전산장부의 영향은 없으나, 2001년도에는 모두 전산장부에 의해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완전한 시스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세외수입 주관부서인 본청 세외수입팀은 불완전한 전산시스템을 이유로 별도로 수입관리를 하는 이중업무를 하고 있어 행정비능률을 초래함은 물론 관련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 둘째, 본청 및 구청의 해당과의 담당자들 또한 여러 가지의 전산장부에 대한 사용불편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시스템 이해 미숙으로 인한 불편도 상당수임) 이는 전산장부의 불신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각 과별로 전산장부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아직도 전산장부의 사용법이 서툰 경우가 많고 매월의 징수부도 출력되고 있지 않았음

- 셋째, 전산설계상 과년도 수입의 회계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과년도 징수부가 회계법상의 세목으로 인지도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점임(현재 수정 보완 중)

□ 개선건의안

- 무엇보다 관련담당자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교육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담당자의 프로그램 개선요구사항 중 상당수가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결국 시스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임. 과년도 수입에 대한 조속한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완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전산 수납에 대한 일계검토 업무의 효율화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세정 전산시스템하에서는 시금고와 연계하여 세입이 자동 집계되고 이것이 곧바로 전산 징수부가 되므로 전산 수납처리의 정확성이 곧바로 결산의 정확성으로 이어집니다.
- 현재 전산 수납업무의 입력 정확성에 대한 Batch Control은 매일 매일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일계표와 별도로 Excell을 이용한 일계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 일계검증에 다소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일계표를 다시 도세와 시세로 구분하여 별개 수입일계표를 Excell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도세로 구분할 뿐 전산 출력 일계표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 별도의 일계작업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시금고 일계와 전산 출력일계,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 일계를 대조하는 지방세입 총괄표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 개선권고사항

- 수입 일계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말고 지방세입 총괄표에 대한 결제로 입력통제 및 결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지방세입 총괄표에 시금고에서 통보되는 일반회계 세입일계표와 우리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작업 일계, 그리고 영수필통지서 집계일계가 하나로 편철되어 결재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입 총괄표를 당일의 업무 누락을 방지하는 핵심 문건으로 활용하고 징수부 작성과 결산을 위한 데이터는 세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얻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세입 총괄표에서 시금고 공과금 일계 통보액과 수입일계, 그리고 전산 정리내역간에 불일치되는(특히 건수에서)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단지 '가산금 1건'으로만 기재해서는 결재과정에서 검증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 특히 자납분 수기 영수필통지서를 집계하여 전산 수납처리한 경우에는 당일 작업 내용과 건수에 대한 통제와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세정 전산화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까지 전산화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업무가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 세정 전산화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수납확인의 자동화입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세목별 수납여부의 검토와 확인은 수작업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세정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각 납세의무자별 지방세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저해됨은 물론 전산화 본연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세의 경우 별도 Excell로 작성된 납세 대상자 선별 내역서에 일일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수납사항을 다시 입력하여 미수납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과중은 물론 오류와 부정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실·과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장 등록대장, 병원 허가대장 등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의 Excell 프로그램에 입력하고는 다시 그 각각을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수납확인하고 그 내역을 일일이 입력하여 미수납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 세무서의 갑근세 신고자료 등을 받아 각각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수납확인한 후 미수납자만 선별하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납확인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여 업무 정확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에도 각 실·과로부터 협조받는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를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다시 별도로 수납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있어 결국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 결론적으로 세정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개별 관리되는 Excell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아 전산화의 효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리대장 기록의 정확성 입증 시스템이 없으며,
- 수납확인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기능이 없습니다.
- 그리고 Excell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관리대장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점토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 특별 징수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 자료를 넘겨받지만 그 건수가 너무 많아 개별 수납 확인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 개선권고사항

- 모든 수납사항의 검토와 확인은 반드시 세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 즉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수필통지서의 입력처리와 징수부 작성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수납사항 확인도 모두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통합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특별징수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과세자료를 입력하면 수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검증 프로그램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 별도의 Excell 대장에 세정 전산시스템에서 눈으로 확인한 수납사항을 다시 입력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수납일부인 짚는 것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 집중적인 세정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자납사항 확인 및 세원포착 업무를 상당부분 세정 전산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III. 결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권고

1) 과년도 이월액과 체납액과의 차이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9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98년말 미수납액 차기이월액과 99년초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불일치됨을 지적한 바 있음
2000년도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산에 반영한 바 99년도의 결산검사시의 지적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체납이월액과 관련하여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과년도 징수결정액과 체납리스트상의 체납액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중 종합토지세, 세외수입 중 자동차 과태료를 표본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종합토지세(2001. 6. 1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2000.회계 이월액	징수결의 (+)	감액 (-)	2001.회계 중 수납액	6월분 중 가산금	2001. 6. 11 현재 미수액	체납리스트상 체납액	차액
2000년분	1,210,738	31,164	17,366	177,617	9,223	1,053,429	1,060,071	(6,642)
99년도분	845,029	21,259	10,463	52,716	6,809	801,975	804,037	(2,062)
98년도분	667,291	15,281	1,767	21,561	4,983	657,183	653,861	3,322
97년도분	300,885	5,927	6,443	2,620	1,822	274,947	275,156	(209)
96이전분	481,824	3,940	6,732	6,699	964	417,685	412,002	5,683
합 계	3,505,767	77,571	42,771	279,213	23,801	3,205,219	3,205,129	

⇒ 전체합계로 볼 때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도별 차이로 보면 약 1천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함

- 과태료

(단위 : 천원)

구 분	자동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합 계
2001. 6. 10 현재 전산상 체납액	2,788,375	97,610	1,051,148	3,937,133
2001년도 중 수납액	56,100	0	18,456	74,556
2000. 결산일 현재 전산상 체납액	2,844,475	97,610	1,069,604	4,011,689

2000. 결산서상 과년도 이월액	2,864,973	99,470	1,274,399	4,238,842
차 액	(20,498)	(1,860)	(204,795)	(227,153)

⇒ 차이가 큰 주요원인은 93~96년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체납자료를 전산상 입력누락한 데 있음
 ⇒ 여러 세외수입 세목의 체납액 중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과태료이고 따라서 체납액 징수노력도 가장 크게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과거의 체납자료를 전산입력조차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개선건의안

○ 지방세

- 무작위로 발췌한 종합토지세 한세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다른 세목에서도 이월액과 체납리스트액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 복식부기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차이는 대차대조표 총액과 부속명세서의 개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복식부기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특별점검 노력은 요구됨
- 또한 체납리스트는 항상 조회일 현재액만을 알려주므로 결산일에 체납리스트를 출력하여 결산서 이월액과 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바 이의 실행을 권고드림

○ 세외수입

- 자동차과태료를 제외한 본청의 기타 세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3개 구청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차이조정 요구됨
- 자동차과태료의 경우 전산입력 누락한 체납자료의 양이 많고 관련인원(2명)도 계속되는 현재 업무에 매달려 계속적으로 차이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라도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 Clean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입귀속시기의 적용오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규상 2000년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는 경우 동 금액을 2000년도의 수입액으로 하도록 하는 이른 바 '연도폐쇄기' 제도가 있으나, 실무적으로(특히 세외수입 해당과) 이러한 개념을 이해 못 하여 법규에 맞는 세입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쓰레기봉투 수입에 대한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2000년도 중 판매액	6,583,800
결산서상 수입계상액	6,618,887
과다계상액	35,086,307

• 파다계상 내역

- 99년도 귀속을 2000년도로 수입처리한 금액 : 114,985천원
- 2000년도 귀속을 2001년도로 수입처리한 금액 : 79,898천원

⇒ 쓰레기봉투 수입 이외에도 세외수입 중 적지 않은 세목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수입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선건의안

- 세외수입의 담당자는 대부분 회계규정에 익숙하지 않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맞는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바 이의 실행을 권고드립니다
- 추가하여 회계장부도 해당과별 작성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장부작성 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개선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보고서에 기록되는 금액의 일관성이 상실되어 제대로 된 현재액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금액의 속성	취득가액과 평가액의 혼합	취득가액	평가액 (매각 가액)	취득가액과 평가액의 혼합

-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현재 시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여 재산실 불과 항상 대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일 보고서 내에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구 분	용도별 현황	종류별 현황	차 액
증 가 금 액	5,635억원	5,617억원	18억원
감 소 금 액	254억원	236억원	18억원

- 세입과 세출 결산서의 재산매각수입 및 재산취득 지출내역과 공유재산 증감 사항이 내역별로 비교될 수 있는 명세서가 없습니다.
- 매각된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와 매각 총액의 차이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개선권고사항

- 결산서상 금액의 일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 당해연도 증가액 : 563,263,268천원

- 당해연도 감소액 : 25,138,089천원
- 보고서 체계에 대한 보완을 권고합니다.
 - 보고서를 모두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당해연도에 매각된 재산의 취득원가와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보여주는 매각손익 보고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는 향후 복식부기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기 타

《부천역 지하상가 및 베르네천 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

□ 현 황

- 부천역 지하상가 사용료
 - 부과액 : 272,522천원
 - 징수액 : 270,819천원
 - 체납액 : 1,703천원
- 베르네천 시장 사용료
 - 부과액 : 48,567천원
 - 2000년 : 27,233천원
 - 과년도 : 21,334천원
 - 징수액 : 21,224천원
 - 2000년 : 15,594천원(57.3%)
 - 과년도 : 5,630천원(26.4%)
- 체납액 : 27,343천원
 - 2000년 : 11,639천원(42.7%)
 - 과년도 : 15,704천원(73.6%)

□ 개선방안

- 부천지하상가 사용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 베르네천시장 사용료는 오정구청 개청시 진입도로로서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가 필요함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미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검사일 현재 미정리액
 - 계 : 27,961,790원
 - 시청 : 21,201,030원
 - 원미구 : 5,098,390원
 - 오정구 : 1,662,370원
-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분실 또는 원격지 거주자가 차량등록증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 고지서 수령에 많은 기일이 요구되어 계좌입금을 할 경우 납부의무자와 입금자 성명이 다르게 입금하여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차량등록증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민원발생이 예상됨

□ 개선방안

- 통장에 명시된 거래점포에 의뢰하여 무통장 입금표에 기재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리토록 하고,
- 앞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는 고지된 납부의무자 성명으로 입금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금자 성명뒤에 차량번호 4자릿수를 기재토록 홍보 요망

〈주차위반 과태료(이중납부) 과오납 환불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환불내역(원미구)
 - 계 : 68건 2,680천원
 - 영수증 회수 : 19건 710천원
 - 영수증 미회수 : 49건 1,970천원
- 주차위반 과태료 이중납부자가 과오납금 환불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한 영수증 2부 중 1부는 복사, 1부는 영수증원본을 회수 후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 영수증 미회수 49건 1,970천원에 대하여 다시 환불 신청이 있을 경우 다시 환불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기이 환불자 49건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과태료 이중납부 과오납 환불시에는 영수증 1부를 반드시 징구 요망

〈과태료 미납에 따른 대책강구(청소사업소 폐기물관리팀)〉

□ 현 황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A주식회사의 사업장폐기물 초과보관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을 관련법에 의거 2000. 9. 8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2001년 현재까지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과태료 처분통지 이후 2번의 납부촉구 통지 이외에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

□ 대 책

-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금융상조처 등을 통해 미납액을 정리할 것

〈건강검진의 활성화(소사구보건소)〉

□ 현 황

- 2000년도 중에 소사구 보건소의 건강검진 이용현황을 검토한 바 총 이용인원수가 1,641명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대상	건강검진인원	비고
합계	1,641명	

공 무 원	1,329명	81%
직장의료보험대상자	165명	10%
지역의료보험대상자	147명	9%

□ 문 제 점

-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이용현황은 총 이용인원의 81%를 공무원이 이용하였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이용률이 낮은 것은 건강검진업무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나 보건소에서의 건강검진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개선방안

- 건강검진업무의 지속적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구청 주무부서의 세외수입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원미구 환경위생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과태료 징수부상에 회계연도 마감미흡함. 특히 6월 9일자 300,000원과 6월 10일자 300,000원 수납분이 2000년 회계연도 마감시 누락되는 등 징수부 관리가 미흡함. 아울러 오수분뇨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징수부상에 미수납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향후 누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개선방안

- 각 구청의 업무 부서에서 부과,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에 있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분기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일제 조회를 통하여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것

《각 동사무소의 제증명 수수료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의 현금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4월부터 수입증지를 대체하는 복합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잦은 인증기 오류, 담당자의 업무 착오, 징수부와 관리대장의 형식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실물 수입액의 착오가 발생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동에서는 일일결산 후 마감하는 사례와 당일 수납금을 익일에 바로 시금고로 입금치 않고 2~4일 후 입금하는 사례도 있음

□ 개선방안

- 세외수입 증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의 노후된 인증기를 신규로 교체하고 마감 후 일일결산을 제도화하며 동장 또는 사무장이 일일결산 및 관리대장과 징수부의 결제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타 지적사항》

- 원미구 각 동의 경우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총선거경비를 각 동별로 3월에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전도받아 4월말에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12월에야 집행잔액을 반납함(소사구는 4월에 반납)
- 중4동
 - 원미구청의 실수로 인하여 2단계 취로사업비 556,000원을 7월 19일에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전도받아 7월 25일에 일상경비 통장으로 입금 조치함
- 중1동
 - 세외수입 징수부상에 수납액 및 미수납액의 월계를 일부 착오 기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회계연도 마감 미흡
- 소사본3동
 - 세외수입 징수부상 총괄부 미기재
 - 세외수입 징수부 수납액 및 미수납액 중 월계 일부 착오 기재
 - 증지수입에 있어서 인증기 징수결정액 보다 많은 수입액 773,26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반납
 - 증지수입을 익일 시금고에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7건 있음
- 심곡본1동
 - 11월 29일자 인지수입을 누락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함
 - 세외수입 징수부 수납액 및 미수납액 중 월계 일부 착오 기재
 - 심곡복지회관과 월드웬스클럽으로부터 제세공과금(전기세, 수도세)을 6월분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납 처리, 7월분부터 현금출납부에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됨
- 교통지도사업소 중 오정구(2000년 9월말)
 - 교통사업특별회계(오정구)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한명환 외 167명의 수납액 700만원이 2월 15일에 수납되어 3월 3일에 과목경정처리(2000년에서 1999년으로)되었음
 - 총괄 징수부에는 2월 15일에 이상열 외 175명 732만원 계상 후 3월 3일에 오선택 외 167명 세입 정정 700만원 했으나,
 - 현년도 징수부에는 2월 15일에 732만원 계상 과년도 총괄부에 3월 3일 700만원 세입정정 700만원 처리

IV.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1) 탄력적인 자금관리시스템 도입

□ 제안배경

- 지난 수년간 세출분야에서 자금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 습니다.
- 급여업무의 본청 통합집행
- 자금배정을 즉시배정으로 전환

- 월말 일상경비 자금의 Zero화 추진
- 그 결과 매월말 일상경비의 평균잔액이 3.4억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자금운용 및 관리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 시금고를 통한 자금관리 규모도 매월 평균 888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이제 자금배정 등 세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였으니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 현실태 및 문제점
- 세입과 세출 등 자금계획의 부정확으로 인해 자금운용이 소액화, 단기화되고 있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 분	현 실 태	비 고
총 운영건수	669건	정기예금, 환매채 등
평균 운영규모	1~5억 /건	
평균 운영기간	1~3개월	

- 현재 각 부서별로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세입의 경우에도 월별 징수계획서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그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자금운용과는 크게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월별	지출계획	세출실적	차 액	비 고
1	1,721	266	1,455	
2	-	310	-310	
3	409	251	158	
4	288	217	71	
5	205	27	-22	
6	269	306	-37	
7	180	385	-205	
8	186	242	-56	
9	204	276	-72	
10	119	318	-199	
11	97	287	-190	
12	493	756	-263	
합 계	4,171	3,841	330	

- 그러나 월별 세출실적을 보면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 12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 평균 280억 정도를 세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자금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충분한 이자수익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부담의 증가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손익은 결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이 자 액	원금잔액	이자율
이 자 수 입	65억	888억	6.7%
지 급 이 자	135억	1,581억	8.5%
금 융 손 익	-70억		-0.8%

□ 개선사항 제안

- 자금관리의 목표를 수입이자 극대화에서 금융손실 극소화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여유자금을 단순히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지급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채무상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그 상환규모를 순세계잉여금의 60~70%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치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예산과 자금관리는 구분하되 정작 자금자체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금 예치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기금에는 별도의 이자율을 확정하여 이를 기금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종합적인 자금운용에 효과적입니다.

구 분	2000년	1999년	1998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828억	622억	845억	
기 금 잔 액	293억	244억	208억	
합 계	1,121억	866억	1,053억	
채무상환 권고액	672억	520억	632억	
금융손익 개선효과	12억	10억	11억	

- 그리고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고 역할이 소진된 기금과 그 역할이 미흡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그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에도 그 일몰 요건과 시한을 명기하여 기능을 다하고 난 후에는 채무

상환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금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재산운용을 권고합니다.
 - 세입징수 및 세출계획을 보다 현실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세외수입계와 집행을 관리하는 경리계에 대해 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시 전체의 자금관리와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 펀드매니저(Public Fund Manager)의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보다 신속적이고 탄력적인 자금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처리할 수 있는 당좌차월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 시금고와 100억 정도의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인 자금 불일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단기적 금융상품 해약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우리 시의 평균 예치금액이 약 888억원이므로 평균잔액 대비 11%정도의 당좌차월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2) 효과적인 재정건제시스템 구축

□ 제안배경

- 우리 시는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급격한 세수의 증가보다는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의회의 여러 역할 중 재정운용의 검토와 견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그러나 시 재정의 규모가 방대하고 필요한 세부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막대하여 재정수치의 생성과 그 검토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내부감사, 상급기관감사 등 중복 및 유사자료의 요청으로 업무가중 유발
 - 제출되는 다양한 유사자료의 정확성 확인 불가능
 - 각종 데이터간의 상호 유기적인 검토 불가능
- 따라서 다양한 재정분석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됩니다.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결산검사의 경우 작성된 결산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업무이행의 정확성 검토 또는 업무 시스템의 문제점진단 등에 집중하여 업무감사와 경영진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시의회는 다시 결산서에 기초하여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징구하여 재정운용 검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결산서는 물론 제공되는 각각의 데이터는 기록된 수치의 정확성이 모두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를 토대로 한 분석 역시 정확한 것일 수 없으며,

• 각 의원 또는 위원회마다 요구하는 자료에 중복이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자료의 생성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결국 담당 공무원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호 중복 또는 유사한 데이터를 그 정확성도 검증하지 못한 채 재정분석에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을 견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선사항 제안

-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별 데이터의 생성과 검증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결산검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결산서와 제반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 그 과정에서 업무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 즉 결산검사는 결산서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별도로 의회의 자료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동종, 유사 자료는 조정하여 이들 자료를 생성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들 업무를 전문가 집단에 위탁하는 전문용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전문가 집단이 의회의 위탁을 받아 집행부의 결산내역과 기타 세부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가 집단은 단순히 결산검사만이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 데이터의 조정과 생성 그리고 그 정확성 검토를 수행하며 기금과 보조금 정산서 등 각종 정산보고서 등의 일상적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럼으로써 의회의 재정 분석과 견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 업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반복적인 그리고 정확성 검증도 못 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비효율의 제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V. 결 론

-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전산화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과정에서 자료의 정리가 많이 진행되어 자료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산화 환경에서는 입력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통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업무처리 역시 모두 전산시스템에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업무별로 별도의 수작업 처리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세입업무의 정확성은 물론 결산과 자금관리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개선이 시급합니다.
- 세입을 둘러싼 업무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 요청됩니다. 특히 이자율의 하락과 지하

철 분담금 등 미래 거액자금지출의 예상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과 채무상환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자금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5. 세출결산

I.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 농산지원사업소

- 예산액 : 6,069,207천원
- 계 속 비 : 2,912,069천원(48.0%)
- 지 출 액 : 2,251,602천원(37.1%)
- 불 용 액 : 905,536천원(14.9%)

○ 징 수 과

- 예산액 : 439,631천원
- 지 출 액 : 300,810천원(68.5%)
- 불 용 액 : 138,820천원(31.5%)

□ 문 제 점

-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청사신축공사가 2000. 5. 28 준공되었으나 청사신축 잔액이 812,455천원을 포함한 905,536천원이 불용되었음
- 징수과에서는 우편 발송료 63,437천원과 고지서 봉투제작 16,713천원 등 138,82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평균 불용액이 4.7%인 데 비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음
-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없었음

□ 개선방안

- 향후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망

II.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신청 개선 방안

□ 개 요(현황)

- 보육료 수혜인원 : 1,300명
- 대상 : 0세~5세
- 월 보육료 수혜내역
 - 2세 미만 : 225,000원
 - 2세 : 186,000원
 - 3세 이상 : 115,000원

- 매년(3월 1일) 보육시설에 입소신청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모·부자 증명서를 받고 있음

□ 문제점

- 저소득층 자녀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하는 생각과 맞벌이 등 시간상의 부담으로 보호자들이 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의견)

- 연초 보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시설장이 직접 해당 동사무소에 일괄 수급자 확인을 받아 보육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II.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 현황

-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 및 자체경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국비를 관리하는 통장과 도비, 시비, 기타경비를 관리하는 2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비, 도비, 시비의 정산은 당초 사업계획에 준하여 별도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문제점

-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통장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도비, 시비 등 명확한 사업에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의 성격과 용도 등이 너무 폐쇄적임
- 보조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절대적인 경비이나 규정상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 정산에 있어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등 번거로운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보조금과 자체경비를 통합 운영하여 정산하고 자체 내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산금액은 계획된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말하며 통상 자부담과 지원금을 합한 금액임
- 보조금과 자부담(자체사업예산)은 공급 또는 공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현금출납부기록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IV.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보조금 정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자체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기감사(3년) 및 사안별 수시감사를 받고 있으며 기관간 정산검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보조금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형식적으로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지출증빙서류, 소명자료, 관련사진 등)를 정산보고서로 받고 있어 많은 양의 지출증빙서 사본제출에 따른 낭비적 요소가 있으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부터 정산서류 간소화를 바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매년 정산보고서 제출시 최소한의 서류로 대체하고 지출증빙자료는 자체보관하는 방안 강구(교육청의 정산검사서로 대체)
- 교육청 정기감사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에 관한 검사결과서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

V. 문화단체 풀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풀보조금(문화예술과 소관)지원현황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대표자	사업내용	지급액 (천원)	비고
계		9건	9명		26,000	
1	4. 17	춘의동 주민자치위원회	장금수	원미산 진달래 꽃 축제	2,000	
2	4. 21	미술교육협의회	이일우	제16회 복사골예술제 일환 열린미술대축제	3,000	
3	6. 1	부천북부지역2000 대축제추진위원회	민경찬	부천북부지역 장미2000 대축제	5,000	
4	6. 22	(사)미술협회 부천지부	송영애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념 부천미술사랑전 개최	1,500	
5	6. 23	(사)예총부천지부	심우섭	제16회 복사골예술제 참가 일본 모모타로아가씨 체제비 지원	1,500	
6	6. 24	UN IAEWP 경기서부지회	김철호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사진전	2,000	
7	6. 28	(사)전통공예 부천지부	이명희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념 전통공예전시 및 시연회	3,000	
8	7. 13	한국소년소녀 아카데미합창단	추용운	2000.천진소년아동예술절 참가	3,000	
9	8. 23	(사)한국무용협회 부천지부	오은령	제3회 태평양국제무용제 참가	5,000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문제점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실행 단계에서의 지원요청으로 행정력 미약과 실무적 정보공유의 한계성 대두
- 문화도시의 시정방침에 부응하는 행사라 하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의 한계성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이나 지원신청액의 전부를 수용하기가 곤란함

○ 지원요구단체가 자위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에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점 대두

○ 판타스틱영화제,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펼쳐지는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음

□ 개선방안

○ 문화예술단체의 추진사업계획과 지원신청계획을 매년 9월 중 파악하여 최대한 일반회계나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개별단체가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 실무팀과 협의하여 예산지원의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조금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규모를 점차 늘리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활용함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 임의적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지원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공고기준을 준용(자부담 50% 이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VI. 명사이월사업이 너무 많음

□ 현 황

○ 쥘·폴생활사박물관 건립, 벌석기념관 건립, 용기민속마을 조성,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관련 예산액 지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되어 차기연도로 예산을 이월시켜 사용하고 있음

○ 2001년 현재까지도 예산액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임

□ 대 안

○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검토(환경성검토 등을 포함)가 이루어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명사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타당성검토를 재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조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VII.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5월에 설립된 부천만화정보센터는 2000년 10월까지 법인이나 단체로서의 정관과 운영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에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1999년도에 446백만원, 2000년도에 74백만원 등 총 520백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한 것은 부적정함

•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예산편성, 집행 및 회계처리문제에 따른 감사지적에 따라 2000년 10월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갖추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받고 있음

○ 만화규장각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

•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한 2000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총계	사업비	운영비	사이버만화 도시운영비	인건비	만화규장각사업비		
						소계	도비	시비
보조액	845,510,000	243,400,000	12,000,000	103,710,000	34,800,000	451,600,000	202,250,000	249,350,000
집행액	805,959,060	236,581,520	11,909,870	93,206,580	29,755,000	434,506,090	202,250,000	232,256,090
집행잔액	39,550,940	6,818,480	90,130	10,503,420	5,045,000	17,093,910	0	17,093,910

- 이 중 만화규장각사업비는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한 2000년도 보조금 845,510,000원 중 451,600,000원으로 53.4%를 차지하고, 총 집행액 805,959,060원 중 434,506,091원으로 약 54%를 차지하는 등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한 4/4분기 보조금을 연말인 12월 27일에야 2000년도 총 보조금액의 약 62%인 521,410,000원을 전도하여 2000년 2월까지 두 달 간에 걸쳐 만화규장각사업비로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는 바 이는 1999년에 전도된 경기도 보조금을 2000년 회계연도 안에 집행치 않았을 경우 경기도 보조금이 반납됨에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회계연도 마감 전에 서둘러 집행된 것으로 사료

□ 개선방안

-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정부 회계에 준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행위 후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향후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사업 중 만화규장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및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재원조달방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보조금 통장의 관리에 있어서 2000년 1, 2월에 1999년 보조금 집행과 2000년 보조금 집행이 혼재되어 있음. 향후 회계연도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VIII. 수요 예측을 통한 일상경비의 효율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녹지공원과의 경우 2000년 12월 27일 연내 마지막 일상경비 자금 전도 및 수령시에 소요 일상경비에 대한 예측이 없이 무조건 연간 예산배정의 잔액자금 15,216,000원을 모두 수령하고 2001년 1월 31일에 그 전도자금의 60%에 달하는 9,101,790원을 반납

□ 개선방안

- 특히 급양비 중 특근매식비의 경우 제때(적어도 익월)에 집행되지 않고 2, 3개월 후(12월 27일에 9, 10, 11월분을 한꺼번에 집행)에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적어도 사전에 지출결의 금액을 확인하여 자금 전도시에 불필요한 금액을 수령하지 말 것

IX. 애로기술지도 보조금의 지원제도 개선(기업지원과)

□ 현 황

-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공정 등과 관련한 애로기술사항 등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약 2,000,000원의 애로기술지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제도는 산학협동체제로 되어 있어서 관내의 대학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용역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문 제 점

- 현행의 제도 내에서 용역보조금은 1업체당 약 2,000,000원이며 따라서 심오한 기술의 개발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00년도의 해결과제를 검토한 바 "생산관리 방향" "임펠라의 설계방법" 등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성격의 애로기술과제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한 바 정산시의 결과물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애로기술의 해결과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개선방안

- 애로기술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에서 개선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적은 예산을 감안할 때 중요하고 일반적인 과제의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로기술과제의 심사평가시에 과제의 구체성 및 과제결과물의 구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산학협동체계를 이용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고 있으나 과제의 구체성에 비추어 불 때 지도업체를 전문 건설업체를 포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X. 해외인증규격획득업체 사후관리 개선(기업지원과)

□ 현 황

- 현재 관내 해외인증규격획득업체에 대하여 해외인증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인증규격획득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선건의안

- 해외인증규격지원사업의 성격상 인증획득과 함께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나 해외인증규격의 취득목적이 수출이나 경쟁력강화로 인한 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재의 보조금 정산제도에 추가하여 인증획득업체의 인증획득 후의 매출이나 수출액의 변동 등과 같은 내용의 사후관리를 추가하면 지원성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XI. 복지관 전산프로그램 설치관련(사회복지과)

□ 현 황

- 2000년도에 관내의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복지관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편의를 위하여 시비를 복지관별로 10,000,000원을 지원하여 회계전산프로그램을 단체로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복지관별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전산프로그램업체를 선정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시에 2개의 업체가 경쟁하였으며 그 중에 1개의 업체가 최종 선택되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 문제점

- 복지관의 전산프로그램의 설치시에 업체선정시까지는 복지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팀에서 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실제 계약시에는 개별 복지관과 이미 선정된 프로그램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각 복지관별로 계약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1SET당 최저 10,000,000원에서 최고 12,900,000원까지 다양하게 계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최초 전산프로그램 제공회사의 선정시에 제출된 견적서 9,900,000원보다 모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최초의 팀을 구성한 실익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의 설치시까지 지속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설치에 관여하였으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의 전산프로그램의 설치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며 또한 해당 복지관의 실무자가 참여한 팀을 구성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입을 시도한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의 종료시점이 전산프로그램의 구입이 종료된 시점이 아닌 계약실행 전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괄구입의 업무일 경우에는 관련업무팀에 시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종 업무의 종결시까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XII. 기금과 관련한 결산상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도말 현재 부천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3종이며, 이들 기금에 대한 각각의 운용상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체육진흥기금

- 2000년도 중 기금사용액은 약 1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급방법이 무통장입금이 아닌 현금지급 방식이었음.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현금지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천시체육회에 5월과 8월 2회에 걸쳐 9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서는 1회만 받음. 사업단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단위별로 정산을 받는 것이 조례 및 운영취지상으로도 합리적임
- 사업비 반납액으로 17백만원을 2000년도 중 정산서 제출하였으나 반납자금은 2001년 1월에 수령한 사례가 있음. 반납금은 즉시 수령하여 공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노인복지기금

- 통장잔고와 기금결산서의 결산잔고가 일치하지 아니함. 통장잔액이 1,258,210원 많은 상태임

- 2000년도 중 집행액은 약 1억 3천만원에 이르나 이에 대한 정산서 검토업무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임. 정산증빙은 모두 지회에서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증빙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 연도별 현재 141억원의 기금잔액이 있고 이자발생액 또한 12억원에 이르나 기금집행실적이 없음. 실제로는 620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각각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립장학기금

- 기금관리대장과 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 2000년도 중 지급액은 기금이자분 5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분 44백만원임. 수혜요건이 되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 성격(일부제외 불가)이므로 기금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소규모유통기금

- 중소기업유통기금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함
- 중소기업유통기금과 소규모유통기금은 성격과 운용면에서 거의 유사함에도 금리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구 분	보증구분	소비자 부담금리	2차 보전금리	합 계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신용보증서	6.25%	2%	8.25%
	기타담보	7.25%	2%	9.25%
소 규 모 유통 기 금	신용보증서	5.25%	3%	8.25%
	기타담보	6.25%	3%	9.25%

⇒ 동일한 성격임에도 부천시가 부담하는 2차 보전금리가 차이가 있고 결국 소비자 부담금리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소규모유통업자나 중소기업이나간에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 보전금리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필요함

○ 공통 개선사항

- 기금의 운용과 집행, 정산이 기금부서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운용 및 정산에 대한 통일화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기금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산요령”을 연초 사전에 작성하여 모든 기금이 통일되게 관리, 정산되어야 할 것을 건의드림
- “기금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산요령”에 포함될 내용 예시
 - 건당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입금 송금할 것
 - 사업자등록증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을 것

- 지출관련 증빙서는 원본 첨부할 것
- 사업관련 자료와 관련사진 등 소명자료는 최대한 첨부할 것 등

XIII. 보관금 관리방법의 통일(원미구청 총무과)

현 황

- 도로굴착복구에치금 등의 보관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본청에서 지시한 3개월, 6개월 등 반환기간에 따른 예금분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제 점

- 시본청의 관리방법과 상이하며 개인별로 관리하여야하는 예치금의 경우에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 시본청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실무자에 대한 관리요령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각 구청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